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일 시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10:00~11:30

장 소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프 로 그 램

사회: 김경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30~10:00 등록 및 개회

10:00~10:10 인사말

장영희(서울연구원 부원장)

10:10~10:50 주제발표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윤민석: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서종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부)

10:50~11:30 토론

고경희(서울시청 장애인정책팀장)
김정임(한국지적 장애인복지협회 구로지회장)
최신영(참사랑 주단기보호센터장)

11: 30 폐회

Contents

✳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 1

(윤민석: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 16

(서종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윤 민 석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미래사회연구실 윤 민 석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목차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사례조사
- 국외사례
- 주요결과 및 시사점
- 정책제언
- 자문회의

연구배경 및 목적

-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 역량이 부족하며 평생동안 보호 받아야 함.
-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나 복지관등의 프로그램이 다수 있으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전무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도에 실시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수도권 지역의 성인기 표본을 분석하여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도출하는데 있음
- 연구기간 : 2013. 3.16~6.15(3개월)

연구방법

- 2010년도에 실시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수도권 지역 데이터를 통한 욕구분석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관련 정책 및 서비스 기관 현황 조사
-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현장답사 및 문헌연구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란?

-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

- 서울시 발달장애인은 약 2만7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약 6.6%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자폐성	1,739	360	2,099	989	156	1,145	596	63	649	3,893
지적	4,259	2,709	6,968	4,232	2,877	7,109	5,832	3,297	9,129	23,206
소계	5,998	3,069	9,067	5,223	3,033	8,254	6,431	3,360	9,778	27,099

발달장애인실태조사-개요

- 2011년도에 실시된 발달장애와 관련된 최초의 전국적 조사
- 층화표집 된 조사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시행
- 전국조사의 특성상 서울지역 표본만 별도로 추출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20세 이상 데이터 위주로 분석하였음

실태조사 분석결과-주요복지시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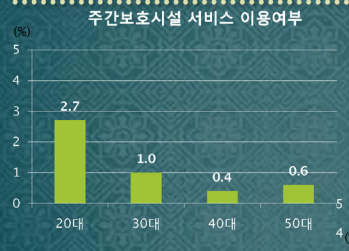

실태조사 분석결과- 주요복지시설 이용률

- 사회서비스 필요여부 결과 설명

-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성인대상자들의 경우 95%이상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성인기 이후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실태조사 분석결과-주요 프로그램 이용여부 vs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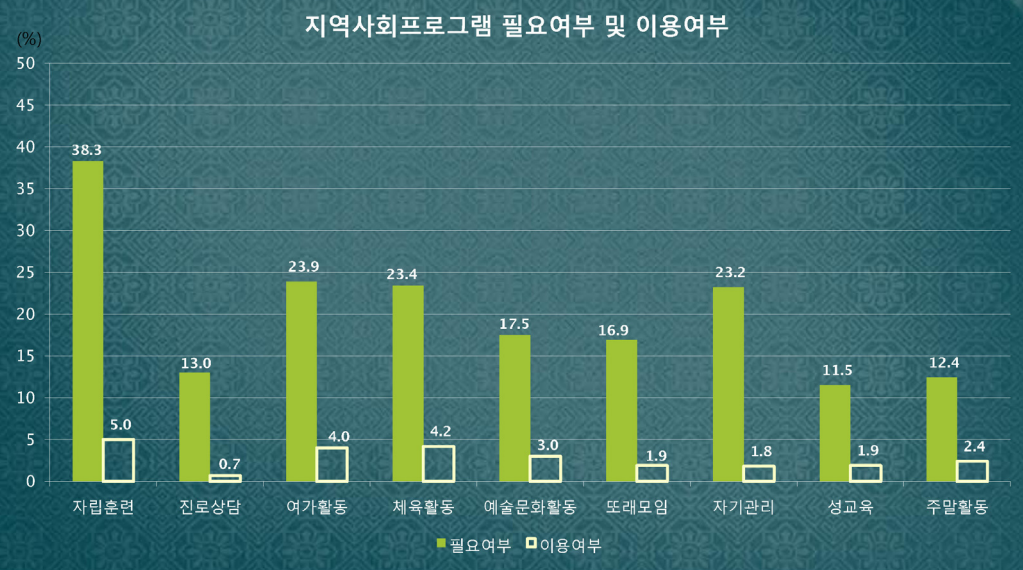

실태조사 분석결과-주요 프로그램 이용여부 vs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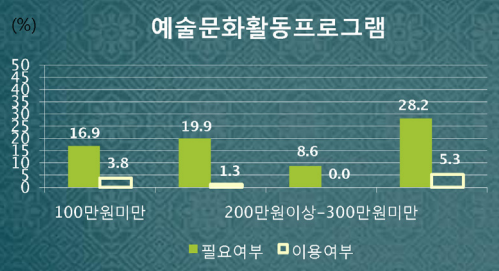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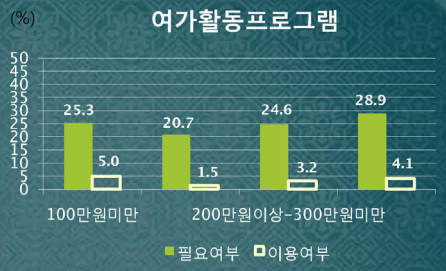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인은 체육활동을, 지적장애인은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득수준별로 볼 때,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 가구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술 문화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실태조사 분석결과-서비스 이용 제약요인

- 지역사회내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시설의 부재
-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일반인대상 복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이용시 발달장애 성인이 이용 불가능하며, 통합프로그램 설치에 비장애이용자들의 반대
- 중증(과잉행동) 장애인 대상 시설/프로그램 부재

사례조사-1

-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연동
- 설립연도 : 2009년 10월
- 직원수 : 25명
- 1일 이용인원 : 약 100명
- 나사함: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사람들

사진-2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옥상정원 및 당나귀 공연사진

- 특징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가 사재를 출연하여 건립
- 현재 연 12억원의 시보조금으로 운영 중이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어려움.
- 부산 전체 발달장애인구 1만명중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중
-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당나귀'운영으로 대내외 기관 인지도 향상

국외사례-1

- Regional Center

-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랜터만법(Lanterman Act)을 근거로 설립한 기관

- 발달장애 서비스 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를 두고 지역별 전달체계인 Regional Center를 설립.

- 평가, 진단, 상담, 개인별 평생 서비스 계획・통합・조정, 자원 개발, 지역사회 옹호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족지원, 서비스 배치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국외사례-2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구매계약(purchase of service) 방식을 통해 제공하면서 총괄 관리

- 개별화된 프로그램 계획(Individualized Program Plan: IPP)을 세우고 평생 동안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성인기로 전환될 때는 개별전환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을 세워 지역 내 그룹홈이나 직업재활 기관과 연계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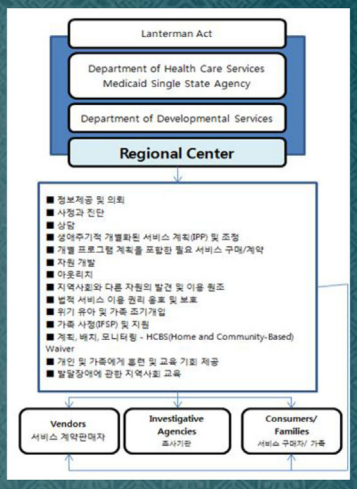

국외사례-3

- 미국 Regional Center 제공 프로그램

서비스명	내용
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 (Day Program Services)	자생력 개발 및 유지능력 향상 상호작용 능력, 표현능력, 지시사항 준수능력 향상 자기 옹호 및 취업능력 개발 지역사회 통합 능력 개발 문제행동 개선능력 향상 여가활용 능력 개발
직업서비스 (Vocational Services)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Habilitation Service)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작업활동(Work Activity Programs)
주거시설 제공 (Living Arrangements)	주택마련 서비스(Affordable Housing) 공동보호시설: 그룹홈(Community Care Facilities) 체험홈(Family Home Agency) 위탁가정 서비스(Foster Family Agency) 자립생활 지원(Independent Living) 중증장애인 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주 정부 발달센터(State Developmental Centers) 생활지원서비스(Supported Living Services)
지원서비스 (Supported Services)	재가 활동보조서비스(In-Home Supported Services) 부모 휴식 · 보호서비스(Respite Services) 이동보조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
조기교육서비스 (Early Start Services)	보조공학, 청력학, 부모교육 · 상담 · 가정방문, 건강지원, 작업 · 물리 · 심리 · 언어치료 등

국외사례-4

- 영국
- **국민의료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권한을 부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 **호주**
- **발달장애인 관련법**

- 빅토리아 주에서는 1986년에 지적장애인서비스법(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Services Act)을 제정

-지적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예: 거주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등),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 유관 기관의 역할 등 명시

국외사례-5

❁ 일본

● 발달장애자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 2004년 제정.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발달지원을 시행하는 데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한 지원 등을 명문화

- 발달장애자지원센터의 설립 에 대해 규정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지원	상담지원: 일상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에 대응
	지역지원 - 복지 제도와 그 이용방법, 여러 욕구에 대응한 정보제공하고 필요시 타 기관과 연계 - 가정, 학교, 시설, 직장에 있어 발달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변의 관계를 정비 - 지원자에게는 장애인 대응방안, 소통, 파 재정리 방안 등 구체적인 어드바이스 제공
진료	진료: 마음의 문제를 가진 아동과 발달장애아에 대해 의사가 진료 시행
	단기케어: 등교거부 혹은 마음의 문제 등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단체활동, 여가지원 등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필요한 생활기술과 적응력을 키움
시 · 정 · 촌및관계시설과의네트워크	시정촌 지원: 발달장애아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를 위하여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 노동 등에 관련한 지역지원시스템을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관련 시설 및 단체와 연대
보급계발·연수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내용과 특성, 대응 방법 등에 관해 일반 지역주민(기업, 가족, 학교,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최
	사회복지시설, 학교, 행정기관 등 지원자를 위한 실천연수

주요결과 및 시사점-1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미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불균형,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른 특정유형의 서비스 부족

❁ 사례조사 결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미흡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및 기존의 일반인을 위한 시설에서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지원 부족
-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 및 지원체계 부족-필터링 현상 존재

	서울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비스기관	261 (20)	6	4	7 (2)	6 (1)	8 (2)	4	9 (2)	9 (1)	11 (1)	11	22 (3)	13 (1)	8 (1)	9 (2)	8	23 (2)	10 (1)	7	8	12 (1)	14	12	17	14 (1)	9 (1)

주요결과 및 시사점-2

- 발달장애인의 노화와 관련된 준비 부족

- 5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증가에 대비한 프로그램 부족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립하지 못할 경우 부양자 사망이후의 경제적 활동, 주거, 활동보조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

정책제언-1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확충

- 지역별 불균형 해소대책 마련

① 바우처 기관 설치시 민간사업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보조금, 세금감면 등) 부여방안 검토

②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 연령대별 서비스 단절 해소

① 학령기 이후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보강 및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② 소규모 거주시설 보급 및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유사기능 프로그램 제공기관(구립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신설 유도.

③ 시청 산하기관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정책제언-2

- 거주지원 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및 직업재활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① 대규모 보호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내 소규모의 그룹홈을 건립 및 지원을 통한 거주시설 확충

②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설립 및 그룹홈과의 연계망 구축 필요

③ 거주시설 근무자에 대한 3교대 근무 법제화 및 위험수당 지급 필요

정책제언-3

- 낮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조정

① 주간보호서비스의 낮활동 프로그램 강화

② 지역사회 여가복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의무 개설 명령 또는 차별금지 조치 필요

- 최중증 과잉행동 장애인 대책 마련

① 과인행동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추가배치 및 지원체계 법제화 필요

② 시설근무자의 업무상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 개발 필요

정책제언-4

- 발달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확보 및 정책적 차별 극복 대책 필요

① 기존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을 통한 발달장애인 지원 거점센터화 필요 또는 발달장애인 이용비율이 높은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검토 필요
② 발달장애인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별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③ 성인지예산과 같은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검토 필요

정책제언-5

- 노화로 인한 건강보호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함

① 고령화되어 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수립 필요
② 학령기 이후 사망시까지 지원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근로 및 소득보장, 주거, 활동보조 지원, 성년후견제 활성화)
③ 중앙정부의 법률 정비보다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인식의 전환 필요

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정책 추진 현황

- 성인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기존 시설활용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 문화.사회체육 프로그램 운영 ('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구), 문화.체육교실 설립 운영(구로구)

- 장애성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추진중)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
.2013년도 졸업예정자 1400여명 중 210명(15%) 취업 목표

감 사 합 니 다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서 종 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2013. 11. 7

서 종 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목차

1. 서론
2.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
3.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조사결과
4.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거주시설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휴먼서비스와 주택의 결합 방식에 대한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는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을 위해 보호주택 등 지역사회 거주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발표함(보건복지부, 2012).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클러스터하우징(cluster housing) 등 다양한 지역사회 거주모델을 개발할 계획임.
    - 탈시설 등으로 자립하는 발달장애인이 독립생활 시작 후 완전히 자립하기까지 기존 거주시설 직원 등을 이용한 재가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임.
  - 서울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모델을 계획함(서울시, 2012).
- 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주택권이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주택을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임.
-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재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주택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2. 연구내용 및 대상

- 연구내용
  -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
  -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조사 결과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대상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 거주시설 입소자 제외

3

1. 발달장애인 현황

-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407,528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7%(27,099명)임.
- 발달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은 23,206명, 자폐성 장애인은 3,893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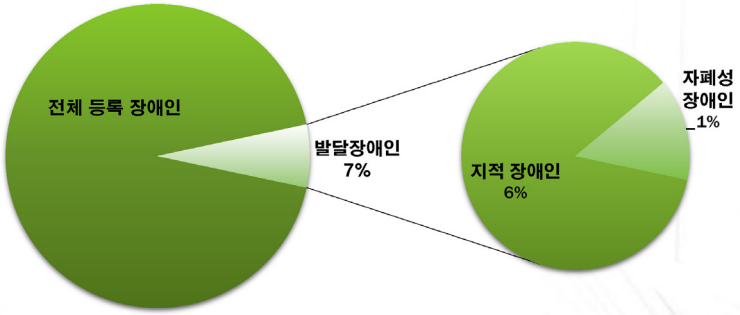

그림 1. 등록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현황(2012년 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

Ⅱ.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

1. 발달장애인 현황

-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은 노원구(2,159명), 강서구(1,879명), 은평구(1,781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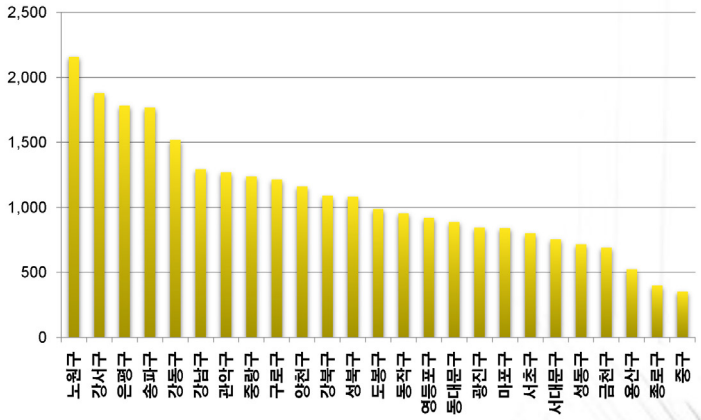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2012년 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

2.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 중앙부처 장애인 지원서비스(복지로 자료 정리)는 영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당(비용)지급,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교육, 기기 등이 있음.

표 1. 중앙부처 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자료: 서종녀 외(2013), 미발간 자료)

구분	내용
고용	수당 지급 : 고용, 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수당 지원 일자리 지원 : 행정도우미, 일자리 지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지원 : 영업장소 제공
교육	비용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서비스 지원 :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교육지원 : 여성장애인교육, 학습권 보장
돌봄	비용 지원 : 출산, 해산비, 장애아보육료, 만0-5세 보육료 서비스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가족양육, 드림스타트 사업
생활지원	비용 지원 : 이동통신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가스요금 서비스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PC, 난청노인수신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활동지원	비용 지원 :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차량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 인력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대학생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기기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6

2.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 중앙부처 장애인 지원서비스 중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공급과 기기 지원 등이 있음.

표 1. 중앙부처 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표 계속)

구분	내용
소득	직접 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간접 비용 : 가정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아동발달지원계좌 기타 비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시설 입 · 퇴소지원	비용 지원 : 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시설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의료	비용 지원 : 보험급여, 장애인의료비, 장애입양아동의료비,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의료급여장애인 보장구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중심재활, 발달재활서비스 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주거	주택 공급 :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지원 기기 지원 : 고효율조명기기

7

2.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 중앙부처 성인기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복지로 자료 정리)는 고용, 주택 등이 있음.

표 2.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자료: 서종녀 외(2013), 미발간 자료)

구분	주된 대상	내용
고용노동부	성인기	훈련(참여) 및 성공수당 지급
교육부	초중고대학생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급식비 지원,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
국토교통부	성인기	장애인 대상 주택공급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장애인	여행 및 문화이용 바우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모든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수당지원, 양육 및 입양 보조금, 출산 · 보육료(양육 포함), 교육비 지원, 의료비 · 진단비 등 보건의료 지원, 지역사회중심재활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자동차 구입, 가사간병 등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및 자립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모든 장애인	연탄, 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관련 비용 및 조명기기 지원
안전행정부	모든 장애인	PC, 자동차 관련 세금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 성폭력, 아이돌봄,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청	성인기	영업장소 제공
환경부	모든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

8

2.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복지로 자료 정리)는 단체지원(위문금 포함)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음.

표 3. 서울시 자치구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자료: 서종녀 외(2013), 미발간 자료)

구분	건 수(단위: 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5
단체 지원(위문금 포함)	13
건강보험료 지원	8
일자리 지원	2
출산 지원	4
주거개선 · 이사 지원	2
유료방송 지원	2
활동보조 지원	1
계	37

9

2.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음.

표 4.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구분		내용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단기보호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주택정책 프로그램

- 주택정책 프로그램은 주택공급, 주거비 보조 및 주택금융제도, 주택개조사업 등으로 분류됨.
- 주택공급 제도는 장기전세를 제외하고 장애인가구가 대상이 됨.

표 5. 정책대상별 주택공급 제도 현황

구분	일반 가구	장애인 가구
공공분양주택공급	○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공공임대	○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국민임대	○	○ (우선공급-장애인 등)
영구임대	○	○ (일반 공급)
다가구매입임대	○	○ (공동생활가정,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장기전세(서울시 Shift)(서울시)	○	

자료: 강미나(2011), 서울시 내부 자료 참고

3. 주택정책 프로그램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거비 보조 및 주택금융 제도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임.
  - 장애인가구도 이용가능하지만 별도의 제도적 지원 대책은 없음.

표 6. 정책대상별 주거비 보조 및 주택금융 제도 현황

구분	일반 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보조	○	
보금자리론	○	
국민주택기금	○	
임대보증금 융자(서울시)	○	
서울형 주택바우처(서울시)	○	

자료: 강미나(2011), 서울시 내부 자료 참고

Ⅱ.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

3. 주택정책 프로그램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표 7. 정책대상별 주택개조사업 제도 현황

구분	일반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농 · 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서울시)	○	○ (장애인가구 집수리사업)
서울시 전세자금 지원(서울시)		○
NGO 및 민간단체 집수리 사업	○	○

자료: 강미나(2011), 서울시 내부 자료 참고

3. 주택정책 프로그램

- 국토교통부「2013년도 주택종합계획」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중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
  - 주거약자의 안전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확대
    -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의무건설비율(3~5% → 5~8%) 확대(2013.6월)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시행을 위해 기존주택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개조시 비용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 2013년 예산 26억원(1,000가구×260만원)
      (연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14

3. 주택정책 프로그램

- 서울시「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2012년) 주거기준
-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검토
  - 시설 중심에서 주택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복지프로그램 기조 전환
    - 신규 생활시설 설치는 지역사회 지원주거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우선 검토: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주택 확충(사례관리사 채용과 병행)
    - 기존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지원주거 프로그램의 전환 가능성 검토 후 탈시설화 촉진
    -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각각 2014년까지 500호, 2018년까지 1,500호의 지원주택 프로그램 시행 예정

15

3. 주택정책 프로그램

표 8. 노인·장애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내용

유형	노인 · 장애인 지원주택
주택형태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일반주택형(barrier free 적용, 가급적이면 universal design 적용) - 주방, (화장실) 공동 사용 - 방 외에 공동거실, 상담실, 지원사무실, 기타 여가공간 별도 설치 - 1인~3인 내외 1실 사용
법률근거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건축법」 상의 용도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또는 노유자시설
조성주체	국가, 지방정부 등 공공이 조성 - 민간(기업) 기부채납이나 민간재원으로 건설 가능
입주대상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입주)
대상자 특성	노환, 경미한 장애(치매, 뇌병변장애 포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사노동이 어려움
임대료(사용료)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산출기준 적용(소득, 재산에 따른 차등제 적용 가능)
지원시스템	의료(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이 수탁운영 - 주택 내에 상담, 재활, 가사지원 등 상주인력 배치(주택규모에 따라 차등배치)

자료 : 서울시(2012)

3. 주택정책 프로그램

-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α 이야기」(2013년)
  - 복지서비스 연계형 : 의료안심주택 도입
    - 시립의료시설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으로 서울의료원(신내) 인근 SH공사 미매각용지 시범사업
    - 의료원, 보건소 등의 인근지역 다가구/공공원룸 집중매입 활용

그림 3. 의료안심주택 내용(자료: 서울시(2013))

1. 자립생활 체험홈 설문조사 결과(자료: 조흥식 외(2011))

■ 자립생활 체험홈 만족도를 보면,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자립생활 체험홈에 대한 만족도(단위: %, N=534명)

구분		4. 만족	5. 매우 만족	4+5(만족)	계	100점 평균
계		75.1	24.9	100.0	100.0	81.2
장애유형	지적장애(534명)	75.1	24.9	100.0	100.0	81.2
장애등급	1급(265명)	100.0	0.0	100.0	100.0	75.0
	2급(136명)	100.0	0.0	100.0	100.0	75.0
	3급(133명)	0	100.0	100.0	100.0	100.0
연령	0 ~ 17세(133명)	100.0	0	100.0	100.0	75.0
	18 ~ 29세(268명)	100.0	0.0	100.0	100.0	75.0
	30대(133명)	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조흥식 외(2011): 384.

1. 자립생활 체험홈 설문조사 결과(자료: 조흥식 외(2011))

■ 자립생활 체험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에 시설에 없어서'(34.1%), '존재자체를 몰라서'(30.6%) 순으로 나타남.

표 10. 자립생활 체험홈 서비스 비이용 이유(단위: %, N=36,188명)

구분		주변에 시설이 없어	존재자체를 몰라	비용부담 때문	이용시간 안 맞음	이용자격 미달	서비스 질 낮음	이용자가 꺽 함	기타	계
계		34.1	30.6	12.8	7.5	63.	3.8	2.8	2.1	100.0
장애유형	지적장애	31.0	31.0	14.4	8.1	6.7	4.0	2.7	2.1	100.0
	자폐성장애	53.7	28.1	2.5	3.8	3.4	2.8	3.8	2.0	100.0
장애등급	1급	36.6	27.5	11.2	5.5	9.9	3.2	2.6	3.5	100.0
	2급	27.2	35.1	19.0	5.7	4.5	3.2	3.0	2.3	100.0
	3급	38.5	28.7	8.4	10.6	5.2	4.8	2.8	1.0	100.0
연령	0~17세	27.6	32.6	13.2	10.2	11.6	3.0	1.1	0.7	100.0
	18~29세	40.5	28.7	9.2	7.9	5.2	2.7	3.3	2.5	100.0
	30대	31.6	25.2	14.8	7.5	5.8	7.7	3.8	3.6	100.0
	40대	35.9	39.6	8.2	8.2	0.0	2.4	2.7	2.9	100.0
	50~64세	36.8	29.3	21.3	0.0	4.0	4.1	4.5	0.0	100.0
	65세 이상	16.1	33.2	32.8	0.0	18.0	0.0	0.0	0.0	100.0

자료: 조흥식 외(2011): 385.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경험 면접 결과(자료: 서종녀(2012))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면접개요

- 2012년 6월 기준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중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언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

표 11. 장애인 면접 대상자 현황

구분	대상자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자립생활 체험홈	참여자1	남	33세	지적 1급
	참여자2	남	45세	간질 · 지적2급
	참여자3	여	38세	지적3급
	참여자4	여	22세	지적3급
자립생활 가정	참여자5	여	22세	뇌병변 · 지적3급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경험 면접 결과(자료: 서종녀(2012))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면접개요

- 면접조사 내용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4대 원칙을 중심으로 분석함.

표 12. 자립생활에 필요한 4대 원칙

항목	내용
개조	일반 주택을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변형 또는 개조시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택 내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함.
개선	현재 상황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이나 노력을 의미함. - 의식적인 개선은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 - 물리적 개선은 주변 환경의 의식으로써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반영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체득한 경험과 지식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을 의미함.
적응	장애인이 자립생활의 조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자료: 김정수(2008), pp.14-15.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경험 면접 결과(자료: 서종녀(2012))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면접 내용

표 13.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의 면접 내용

항목	내용
개조	없음
개선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음. (중략) 지금은 외출도 맘대로 하고 시장도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참여자 1) -거주시설에서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었지만 체험홈에서는 밥도 알아서 하고 빨래도 널고 세탁기도 돌리면서 생활하니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음. (참여자3)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생각과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음. 지역 주민과 함께 분리수거도 하고 눈도 치우면서 지역주민이 되는 것 같음. (중략) 처음에는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한테 응석도 부리고 내가 말을 안 듣기도 했지만 이제 약물치료하면서 돈도 벌고 마음이 편해짐. (참여자4) -체험홈에서 간섭없이 독립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음. (중략) 자립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1년 계약직인데 항상 계약직이라서 스트레스가 큼. (참여자5)

22

Ⅲ.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조사결과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경험 면접 결과(자료: 서종녀(2012))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면접 내용

표 13.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의 면접 내용(표 계속)

항목	내용
반영	-거주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이 문화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체험홈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정보를 알려줘서 관람을 하고 있음. (중략) 교회 목사님을 통해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 (참여자1) -거주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체험홈 입주)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음. (중략)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센터 소장에게 이런 걸 원하니 알아봐 달라고 해서 공부함. (참여자2)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코디네이터이고 (중략) 인터넷 서치할 때 쉬운 것은 찾지만 어려운 것은 못 찾아 (같이 생활하는) 동생들한테 도움을 받음. (참여자3) -체험홈에서는 코디네이터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자립생활 가정은 재단 코디네이터로부터 가끔 도움을 받음. (참여자5)

23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경험 면접 결과(자료: 서종녀(2012))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면접 내용

표 13.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의 면접 내용(표 계속)

항목	내용
적응	-주말 예배 보러 갈 때 혼자서 찾아가고 있음. 예전에는 (교회가는 길을) 몰라서 집에 왔다가 (코디네이터와 함께) 갔지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중략) 처음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스스로 인터넷으로 표 끊고 농구장도 스스로 다녀옴. (참여자1) -아픈 곳은 별로 없는데 외로움이 많아서 (외로울 때) 음악을 듣거나 혼자서 TV를 봄. 체험홈에서 생활하다 보니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즐겁게 생활하고 있음. (중략) 처음에는 체험홈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해 주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여행 계획을 스스로 계획하고 여행도 다녀옴. (참여자3) -예전보다 내 모습이 많이 좋아짐. 약을 먹고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면서 많이 좋아짐. (중략) 약을 끊고 싶지만 (의사와 코디네이터의 만류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음. (참여자4) -체험홈 코디네이터로부터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참여자5)

24

Ⅲ.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조사결과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경험 면접 결과(자료: 서종녀(2012))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 면접 결과

표 14.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거주자의 면접 결과분석

단계		목표	파트너쉽	지원 내용
초기	개선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자립에 대한 인식,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 확립	코디네이터, 동료상담 등 지원	- 서비스 지원 강도와 내용에 대해 우선 순위와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
중간	반영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비공식적 및 공식적 자원)	- 지역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자원과 연계, 참여 유도
	적응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 종교 · 문화 · 직장 등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최종	반영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	- 주택마련, 소득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25

1.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향성

- 다양한 자립생활 지원모델(independent living support model) 개발 필요
  - 자립생활 지원 모델은 전문가와 당사자 및 지원자(가족 등) 집단의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요함.
  -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주거뿐만 아니라 고용, 소득, 의료 및 일상생활보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주거복지는 휴먼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는 주택배분도 필요하고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발달장애인에게 어떻게 주택을 제공하느냐가 아닌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26

Ⅳ.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구축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다양한 특성(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등급,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 특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생애주기별, 장애등급별 주거나 지원서비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구축되어야 함.
  - 특히 발달장애인의 요구조사의 어려움으로 기초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수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강도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
  - 장애 판정기준인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판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장애판정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장애등급 이 외 평가를 통해 서비스 강도와 내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 필요
  - 지역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 분담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제공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별로 누구(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에게 주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 수립이 필요함.

27

고맙습니다.